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www.kopico.go.kr | 1833-6972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실시**
- 자료제출 요구권 및 사실조사권 도입**
- 조정결정안 수락간주제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도개선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재판 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피신청인이 이를 불이행 시 강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 개정,
'23.9.15.부터 분쟁조정 기능이 강화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분쟁조정 참여 의무자 확대 (법 §43)	'공공기관'만 의무 참여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 참여
사실조사 방법 (법 §45)	서류+진술	서류+진술+ 사실조사
조정안에 대한 의사 표시 (법 §47)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 수락으로 간주 '



1.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시행

모든 분쟁조정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 자료제출 요구권 및 사실조사권 도입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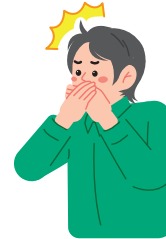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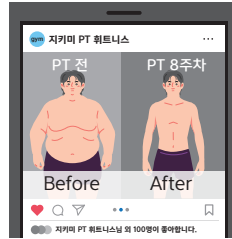
3.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실시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헬스장에서 PT 전후 사진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헬스장 SNS에 게시



SNS에 게시된 사진은 즉시 삭제하고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원칙 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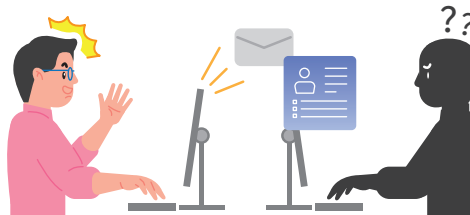
아파트 관리 앱의 게시글을 쓸 때 작성자 성명에 동·호수를 표시 하도록 결정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표기를 최소화하도록 조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발송

공공기관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메일 발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하도록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

숫자로보는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조정신청건수
976건



전년대비 178건(12.2%)증가

조정성립률
75.5%



전년대비 4.5%증가

평균소요시간

15.4일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
20.3일보다 약 5일감소

침해유형

부적합한
개인정보 수집
26%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19.4%

열람등의
요구불응
18.5%

전체 분쟁 유형의 63.9% 차지

유출관련 분쟁

118건

전년대비 107% 증가



개인정보를 침해받으셨나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www.kopico.go.kr | 1833-697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